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8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김상훈 · 고동진 · 김선교
박충권 · 이종욱 · 이현승
김예지 · 이만희 · 최보운
박대출 · 안철수 · 유용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제1절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 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 장애인 등 (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및 전담 창구를 지정할 것
2.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

련할 것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서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융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 요청받은 거래의 지연,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범위,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금융감독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및 전담 창구를 지정할 것

2.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서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융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 요청받은 거래의 지연,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금융교육) ① ~ 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범위,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금융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금융감독원의-----

-----.